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54

발의연월일: 2021. 6. 7.

발 의 자:이 영·김영식·박성중

서병수・서일준・송석준

이명수 · 김승수 · 임이자

태영호 · 한무경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, 후보자에 관한 경력 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·중계하거나,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·토론회를 개최·보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종합편성 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.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을 통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광고나 연설, 대담·토론회 등을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.

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,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·연설·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,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·중계하거나,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 담·토론회를 개최·보도할 수 있는 자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,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기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"를 "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"로 한다.

제71조제12항 전단 중 "보도전문편성"을 "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70條(放送廣告) ① 選擧運動을	第70條(放送廣告) ①
위한 放送廣告는 候補者(대통	
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	
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	
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	
당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가 다음 각 호에 따라 選	
擧運動期間	
綱・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	
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	
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	
[「방송법」에 의한 放送事業	
者가 관리・운영하는 無線局	
및 綜合有線放送局(報道專門編	<u>종합편성 또는</u>
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	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
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하	사업자
이 條에서 같다]을 이용하여	
실시할 수 있되, 廣告時間은 1	
回 1分을 초과할 수 없다. 이	,
경우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	
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, 하나	
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放送	
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	

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回 로 본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- 제71조(후보자 등의 방송연설) ① ~ ① (생 략)
 - ① 「방송법」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(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)·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인터넷언론사는 候補者 등의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할 수 있다. 이 경우 放送演說을 행한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한다.
 - ①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⑧ (현행과 같음)	
제71조(후보자 등의 방송연설) ①	
~ ① (현행과 같음)	
①	
종합편성 또는	
<u>보도전문편성</u>	
① (현행과 같음)	